

永登浦區民會館 및 區議事堂委託
管理에 관한 同意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: 1992. 11.

제안자: 영등포구청장

1. 동의이유

○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관리는 운영의 공공성, 기술성, 경제성 및 대민봉사 차원에 비추어 관리 자체가 구행정의 연결이며, 12개 구청의 구민회관을 관리하기 위해 각분야별로 책임감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특히, 각종 주요행사 때마다 상호 융통성있게 기동배치 할 수 있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질적 향상과 대민봉사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관리주체: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
- 위탁관리기간: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마다 재갱신 위탁관리 가능
- 위탁업무
 - 경비업무: 청사내외 경비 및 대민안내
 - 청소업무: 청사 내외부 청소, 방역, 소독등
 - 전기. 기계업무: 전기, 통신, 방송시설, 냉온방, 상하수도

3. 동의근거

-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1호

永登浦區民會館 및 區議事堂委託
管理에 관한 同意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1호에 관련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관리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관리한다.